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907
----------	------

2025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8. 8., 김기덕 의원(9명 찬성)

나. 회부일자 : 2025. 8. 14.

다. 상정일자 : 제33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5년 9월 1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의정백서, 홍보책자, 월간 서울의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의 의견이 전제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체계적 홍보 체계 마련 구축 및 향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여론조사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여론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활용실적 제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 비밀준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로 같음
-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8. 20.(수) ~ 2025. 8. 24.(일) (5일간)
 - 나) 예고결과 : 없음
 - 2) 소관부서 의견조회 : 원안동의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조례안의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의회 예규인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여론조사 운영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계획 수립·시행된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여론조사 운영 사업의 조례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음.

2 시민여론조사 근거 마련의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와 그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이는 기존의 서울특별시의회 예규인 여론조사 운영 규정*에 따라 매년 추진되어 온 여론조사의 근거 및 각종 필요 사항을 조례 형식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대시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서울특별시의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를 내부방침 등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2년 4월 28일 서울특별시의회예규 제144호로 제정하여 추진해왔음.

- 서울특별시의회는 매년 입법활동 및 정책연구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청년, 주택, 고령사회, 성인지감수성, 기후위기 대응, 교통 등 각종 소관 사무에 관련된 조사 주제를 선정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실시 현황 : 15건(출처: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연번	위원회명	조사주제	조사기간	조사결과
1	운영	노인연령 기준 개선 및 노후복지서비스 시민 인식 여론조사	'24.11~12월	공개
2	행정자치	자치경찰제 시행 3년, 서울시민의 평가와 바람	'24.10~11월	공개
3	기획경제	서울시 청년들의 청년주거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24.11~12월	공개
4	환경수자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환경과 경제회복에 관한 조사	'24.9~11월	공개
5	보건복지	의료인 성인지감수성 여론조사	'24.6~8월	공개
6	보건복지	시니어클럽 직원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24.7~9월	공개
7	보건복지	임대아파트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여론조사	'24.11~12월	공개
8	도시안전건설	안전체험관 필요성에 대한 서울 동남권 시민인식 여론조사	'24.8~11월	공개
9	주택공간	이승만기념관의 송현동 부지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24.5~7월	공개
10	주택공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친화주택(아이사랑홈)-복합문화형' 내 도입 시설 및 서비스 조사	'24.11~'25.1월	미정
11	도시계획균형	서울시 청년정책 홍보실태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	'24.10~11월	공개
12	교통	기후동행카드 만족도 관련 시민여론조사	'24.5월	공개
13	교통	무임수송 등 노인기준 연령 상향 관련 여론조사	'24.11~12월	공개
14	교육	서울 소재 학교 복합화 시설 이용 만족도 및 개선방안 여론조사	'24.11~12월	미정
15	예산결산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24.8~11월	비공개

- 이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간 예규에 의하여 여론을 수렴해 온 제도를 자치법규인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됨.

3 조례안의 구조 및 조문별 검토

가. 조례안의 구조

- 본 조례안은 전체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과 정의를 비롯해 여론조사 수행 및 결과공개 과정에서 의장의 책무, 여론조사 제외 대상, 여론조사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조문체계 및 구성>

구성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 목적 명시
제2조(정의)	여론조사의 범위(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시책 사업 대상)
제3조(의장의 책무)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포 과정에서의 의장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실시 여론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의 우선권 명시
제5조(여론조사 범위)	여론조사 가능 범위 명시
제6조(제외 대상)	여론조사 주제가 될 수 없는 사항을 규정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여론조사 의뢰서 작성 및 제출 시기 규정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의 여론조사 선정 기준 규정
제9조(여론조사 방법)	여론조사 수행 방법 규정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 활용 실적(종료 후 10일) 제출 기한 명시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여론조사 결과의 누리집 공개 의무 규정
제12조(예산지원)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예산 지원 근거 규정
제13조(비밀준수)	여론조사 관련자들의 비밀준수 의무 규정

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안 제1조(목적)**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 지원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며 여론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조례의 입법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정의)**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할 ‘여론조사’ 용어의 뜻을 규정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주제의 범위를 서울특별시의회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으로 명확히 하고 있음.

다. 의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3조 및 제4조)

- **안 제3조(의장의 책무)**는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 과정에 신뢰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론조사를 단순 의견 수렴이 아닌, 정책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장의 책무를 정해 본 조례안의 입법목적에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진하는 시민 대상 여론조사 실시에 관해서는 본 조례안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라. 여론조사의 범위 및 여론조사 제외 대상(안 제5조 및 제6조)

- **안 제5조(여론조사 범위)**는 정의를 통해 언급된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할 수 있는 시민여론조사의 주제 범위 및 실시 주체를 명확히 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와 의회사무처 각 부서가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제외 대상)**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에서 공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여론조사 수행이 선거나 정당 활동에 영향을 주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 **안 제6조제1호**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을 제한함.¹⁾

1)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2022. 4. 26.>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 「주민투표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관한 주민투표권을 인정하면서도 국가 또는 다른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을 반영, 주민투표권이 제한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차원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여론조사 실시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자 함.
- 안 제6조제2호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여 여론조사가 직·간접적으로 선거·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자 함.
 - 안 제6조제3호는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결과 공포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 허위 조사 금지(「공직선거법」 제256조) 등에 저촉될 우려를 예방하고자 함.
 - 안 제6조제4호는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을 제한하여 향후 새로운 법적 제한 사항이 생기더라도 대응 가능하도록 함.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다. 여론조사 의뢰 절차 등(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

- 안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는 서울특별시의회 각 위원회 또는 사무처가 여론조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개시 1개월 전 의뢰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원활한 조사 주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여론조사 선정)는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여론조사 방식의 적정성,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여론조사 주제를 선정하도록 함.
- 안 제9조(여론조사 방법)는
 - 제1항에서 여론조사의 수단으로 ▲전화 및 면접조사, ▲인터넷(전자우편 및 웹조사), ▲SNS를 이용한 조사, ▲우편 조사 등 조사 방법을 나열하고,
 - 제2항에서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및 단체에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 제3항에서 여론조사 시 특정 응답을 강요하거나 편향적인 답변을 유도하는 등 금지 사항을 규정함.

바. 활용실적 제출 및 결과공개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 안 제10조(활용실적 제출)는 여론조사 실시 후의 절차로서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 및 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아가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는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조사 결과가 단순히 수집·보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정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고, 일부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법 활동 지원, 정책연구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예산지원 및 비밀준수 의무 부과(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 **안 제12조(예산지원)**는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13조(비밀준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수행하는 자 모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여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이를 통해 조사 참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의회가 수행하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함.

4 종합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에 내부 행정규범(예규) 차원에서 운영되던 서울특별시의회 여론조사 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구체적으로 여론조사에 필요한 재정적 집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주민투표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령에서 금지된 영역을 제외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수행하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임.
- 또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나 활용실적 제출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단순히 여론조사를 파악함에 그치지 않고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다만, 현행 예규상 활용실적 보고서인 별지 제2호서식에서는 각 위원회 위원장 및 부서장이 활용실적 보고서를 검토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란이 존재하나, 제정안의 별지 제2호서식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각 상임위 등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장 및 부서장 책임 하에 주제를 선정하고, 관리 하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위원장 및 부서장 확인란을 도입한 것이므로 향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겠음.
-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의 법적 안정성·재정 집행의 적법성 등을 확보했고, 결과 보고·활용실적 제출 등 환류 장치를 도입하여 여론조사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임.

담당 연락처

02-2180-7688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김기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07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08일
발 의 자: 김기덕 의원(1명)
찬 성 자: 김 경, 김영철, 김원태,
민병주, 아이수루, 윤영희,
이상훈, 이원형, 이종태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시민참여를 도모하고자, 의정백서, 홍보책자, 월간서울의회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자료를 배포하고 있으나, 실제 시민의 의견이 전제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이에 향후 주요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시민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체계적 홍보 체계 마련 구축 및 향후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정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의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 (안 제3조)
- 다. 여론조사 범위 및 제외 대상에 대해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에 대해 규정함 (안 제7조)
- 마. 여론조사 선정에 대해 규정함 (안 제8조)
- 바.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 규정함 (안 제9조)
- 사. 활용실적 제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0조)
- 아.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대해 규정함 (안 제11조)

자. 예산지원에 대해 규정함 (안 제12조)

차. 비밀준수에 대해 규정함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서울특별시의회 속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정활동 및 정책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과정 및 결과 공표의 신뢰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제 발굴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여론조사 범위)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의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 또는 교육청의 주요 시책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의정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6조(제외 대상)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개별 또는 지역구 의정 성과에 대한 주민 평가에 관한 사항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 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사항

제7조(여론조사 의뢰 및 시기) 위원회 및 사무처는 조사개시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여론조사 의뢰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여론조사 선정)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의뢰된 여론조사를 선정한다.

1. 여론조사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여론조사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
3. 여론조사 활용 가능성 등

제9조(여론조사 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전화(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 전화 병행),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
3.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4. 우편조사
5. 그 밖에 의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제10조(활용실적 제출) 여론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및 사무처는 여론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 및 결과 공개여부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여론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처 여론조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론조사 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의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다.

1. 여론조사 결과가 부적절하거나 입법활동 지원, 정책연구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여론조사 결과 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정치적인 파장 또는 시민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위원회(의원명) 및 사무처 부서명,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12조(예산지원) 의장은 여론조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론조사 의뢰서

번호	
제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모집단)	조사규모 (표본수)
조사시기	활용시기
조사목적	
주요 조사내용	
조사결과 활용계획	
조사결과 언론보도 계획	
기타	

(신청 의원명: , 담당자:)

위와 같이 우리 위원회 또는 부서 여론조사 의뢰서를 제출함.
위원장 또는 부서장 0 0 0(서명 또는 날인)

여론조사 활용실적 보고서

번호						
제목						
위원회·부서명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규모 (표본 수)		
조사기간				조사기관		
조사목적						
주요 조사결과 (요약)						
조사결과 활용실적	조례 재·개정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언론보도	기타	공개여부
향후 활용 계획						
기타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은 제12조(예산지원)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의회사무처 언론홍보과)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이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5 서울특별시의회 시민 여론조사 운영 관련 예산 내역

사업명	예산액(천원)
시민 여론조사 운영	180,000

※자료: 2025 서울시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